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고려사항 추가〉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84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 검토의견	2
------------------	---

※참고자료	10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19.
3. 회부연월일 : 2024. 9.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단계적인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이들 공공기관이 소재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혁신도시 활성화에만 집중되어 혁신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은 제한적이었으므로, 향후 지방 이전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와 다른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이전한 150여 개 기관 중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은 20여 개에 불과하였음.

이에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할 때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외의 지역 간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할 때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외의 지역 간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에 관한 사항”도 고려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지역 중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생략)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u>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외의 지역 간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에 관한 사항</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단계적인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이들 공공기관이 소재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2] 현행법상 혁신도시시책 추진 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u>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2. <u>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u>
3. <u>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u>
4. <u>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이하 생략)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표 3] 혁신도시법 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원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u>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u>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u>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2. 1. 17., 2013. 3. 23., 2018. 3. 20., 2023. 6. 9.> (이하 생략_

2024년 9월 말 기준 공공기관 이전 현황을 보면, 총 150개 기관 중 혁신도시 이전 110개, 세종시 이전 19개, 개별이전 21개 등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현행법상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공공기관 이전 현황

구 분	이전 완료기관	비 고
합계(150)	150개 (당초 153 → 변경 150)	
혁신 도시 (110)	계	110개 (당초 112 → 변경 110)
	부산 (13)	기관 통폐합으로 2개기관 축소
	대구 (10)	
	국립해양조사원('12.12), 영상물등급위원회('13.9), 게임물관리위원회('13.10), 영화진흥위원회('13.1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14.9), 한국남부발전(주)('14.10), 한국주택금융공사('14.11), 한국예탁결제원('14.11), 주택도시보증공사('14.12), 한국자산관리공사('14.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2), 한국해양수산개발원('15.3), 한국해양과학기술원('17.12)	
	중앙병역판정검사소('12.12), 한국부동산원('13.8), 한국교육학술정보원('13.10), 한국산업단지공단('14.1), 한국사학진흥재단('14.3), 한국가스공사('14.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14.9), 신용보증기금('14.1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7), 중앙교육연수원('15.10)	

구 분		이전 완료기관	비 고
	광주 전남 (16)	우정사업정보센터('13.3), 농식품공무원교육원('13.1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4.2), 한국문화예술위원회('14.4), 한국콘텐츠진흥원('14.5), 국립전파연구원('14.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4.8), 한국농어촌공사('14.9), 한국전력거래소('14.9), 한국전력공사('14.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4.12), 한전KPS(주)('14.12), 한전KDN(주)('14.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15.7), 한국인터넷진흥원('17.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9.1)	
	울산 (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4.2), 근로복지공단('14.3), 한국산업인력공단('14.5), 한국동서발전(주)('14.6), 한국석유공사('14.11), 에너지경제연구원('14.12), 국립재난안전연구원('15.12), 한국에너지공단('19.2)	
	강원 (11)	국립과학수사연구원('13.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3.12), 대한적십자사('14.5), 대한석탄공사('14.12), 한국관광공사('14.12), 한국광해광업공단('15.8), 도로교통공단('15.11), 국민건강보험공단('15.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15.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16.12), 국립공원공단('17.4)	(통합) 한국광물자원 공사+한국광해관 리공단 → 한국광해광업 공단('21.9)
	충북 (11)	한국가스안전공사('13.12), 국가기술표준원('14.5), 정보통신정책연구원('14.6), 한국소비자원('14.8), 한국고용정보원('14.9), 법무연수원('15.3), 정보통신산업진흥원('15.6),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16.9), 한국교육개발원('17.2), 한국교육과정평가원('18.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9.12)	
	전북 (12)	지방자치인재개발원('13.8), 한국국토정보공사('13.11), 한국전기안전공사('14.6), 국립농업과학원('14.7), 농촌진흥청('14.7), 한국농수산대학('15.2), 국립식량과학원('15.3), 국립원예특작과학원('15.3), 국립축산과학원('15.3), 국민연금공단('15.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15.7), 한국식품연구원('17.9)	
	경북 (11)	우정사업조달센터('13.4), 기상청 기상통신소('13.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3.12), 조달청 조달품질원('13.12), 대한법률구조공단('14.4), 한국교통안전공단('14.4), 국립종자원('14.7), 한국도로공사('14.11), 한국전력기술(주)('15.8), 농림축산검역본부('15.1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3)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폐지) → 국토안전관리원 (20.12)
	경남 (11)	중앙관세분석소('13.1), 한국남동발전(주)('14.4), 국방기술품질원('14.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4.7), 한국산업기술시험원('15.3), 한국세라믹기술원('15.3), 한국토지주택공사('15.4), 한국저작권위원회('15.6), 주택관리공단(주)('16.6), 한국승강기안전공단('16.7), 국토안전관리원('17.12)	(통합) 한국시설안 전공단 → 국토안전관리원 (20.12) ※ 한국건설관리공사+한국시설 안전공단
	제주 (6)	국토교통인재개발원('12.12), 국립기상과학원('13.12), 국세공무원교육원('15.9),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5.9), 공무원연금공단('15.9),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15.10)	
세종시 (19)	19개		
	한국개발연구원('13.12), 한국법제연구원('14.1), 한국조세재정연구원('14.10), 국가과학기술연구회('14.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14.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14.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14.12), 산업연구원('14.12), 한국교통연구원('14.12), 한국노동연구원('14.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14.12), 한국직업능력연구원('14.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14.12), 한국환경연구원('14.1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15.2), 축산물품질평가원('15.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15.9),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15.9), 국토연구원('17.1)		

구 분	이전 완료기관	비 고
개별이전 (21)	21개 (당초 22 → 변경 21)	
	관세인재개발원('08.2, 천안), 경찰인재개발원('09.11, 아산), 국립특수교육원('10.11, 아산), 한국보건복지인재원('10.11, 오송), 한국보건산업진흥원('10.11,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10.12, 오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10.12, 오송), 질병관리청('10.12, 오송), 한국원자력환경공단('11.3, 경주), 경찰수사연수원('13.7, 아산), 산림항공본부('13.11, 원주), 해양경찰교육원('13.11, 여수), 중앙119구조본부('14.11, 대구), 한국중부발전(주)('15.1, 보령), 한국서부발전(주)('15.8, 태안), 한국장학재단('15.11, 대구), 한국수력원자력(주)('16.3, 경주), 경찰대학('16.4, 아산), 한국농업기술진흥원('16.8, 익산), 국방대학교('17.8, 논산), 한국국제교류재단('18.7, 제주)	(해산) 재외동포재단

주 * 지방이전 시기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단계적 이전 시에 최초 단계에서의
이전을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수
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려
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그간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혁신도시 활성화에만 집중되어
혁신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이 제한적이었으므로, 지방이전
정책의 추진 시 혁신도시와 그 외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와 그 외 비수도권
지역 간 이전대상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인
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제고하
려는 취지로 이해됨.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2020.8.) 보고서에 따르면¹⁾, 혁신도시로의 수도권 인구이동은 2015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이며, 혁신도시의 인구는 수도권에서의 유입인구(16%)보다 인근 모도시에서 유입인구(51%)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 분산효과는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고,

현행법상 신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입지 결정 시 혁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²⁾, 개정안과 같이 기존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시에도 비혁신도시로의 이전을 고려하게 되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촉진하여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려는 정책 목적에 따른 것으로, 비혁신도시 지역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게 될 경우 지역혁신거점 조성 및 확산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의 변동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김태환 외,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국토정책 Brief』 No.775, 국토연구원, 2020. 8. 5.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지역을 혁신도시 또는 모든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엄태영의원안), 혁신도시 중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박희승의원안), 기존 혁신도시 인근지역 등으로의 이전을 허용(김윤덕의원안)하는 등의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표 5] 제22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입지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법률안	대표 발의	주요내용	발의일	소관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2201808)	박상웅 의원	혁신도시 이전 원칙 → 인구감소지역 이전	'24.07.16	국토교통 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79)	엄태영 의원	혁신도시 이전 원칙 →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비수도권) 이전	'24.07.04	국토교통 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152)	박희승 의원	인구감소지역 중 지정된 혁신도시로 이전 우선 고려	'24.06.05	산업 통상자원 중소벤처 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145)	박희승 의원	인구감소지역 중 지정된 혁신도시로 이전 우선 고려	'24.06.05	국토교통 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143)	김윤덕 의원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기존 혁신도시 인근지역 등으로 이전 허용 특례	'24.06.05	행정안전 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입지에 대한 지역 간 입장 차이, 혁신도시간 공공기관 유치경쟁 및 상충되는 법안 발의 등을 고려할 때 폭넓은 의견수렴과 논의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개정안 심사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6

참고 1

공공기관 이전 현황 (2023.12월말 기준)

□ 150개 공공기관 배치 : 혁신도시 110개, 세종시 19개, 개별이전 21개

